

직제규정

공포 제2026-4호(개정 2026. 8.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서림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7장 및 장안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2장에 의하여 본 대학교의 행정조직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직제에 관하여 법령, 정관, 학칙 및 기타 본 대학교의 제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3조(조직) ① 본 대학교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기구를 설립 또는 폐쇄할 수 있다.

1. 대학본부 (시행 2020.1.21.) (개정 2024.3.8.)

가. 부총장

나. 교무처

다. 기획처

라. 입학처

마. 학생지원처

바. 산학협력처

사. 총무처

2. 부속기관

가. 학술정보관

나. 정보전산원 (개정 2025.4.29.)

다. 교육방송국

라. 학보사

마. 예비군대대

바. 교수학습개발센터

사. 교육혁신지원센터 (명칭변경 2023.2.13.)

아. 취·창업지원센터 (명칭변경 2023.2.13.)

자. 학생상담센터

차. 인권·성평등센터 (명칭변경 2023.2.13.)

카. <삭제 2023.2.13.>

타. 현장실습지원센터

파. 대학일자리센터 (개정 2020.8.1.)

하. 원격교육지원센터 (신설 2020.12.22.)

거. <삭 제 2024.3.8.>

너. 농업실습교육원 <신설 2025.4.29.>

더. 미디어홍보센터 <신설 2025.4.29.>

러.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신설 2025.6.20.>

머. 앵커사업단 <신설 2025.6.20.>(개정 2026.8.31.)

버. IR센터 <신설 2025.6.20.>

- 서. 성인학습지원단 <신설 2025.9.25.>
- 어. 국제교류원 <신설 2025.9.25.>
- 저. AI교육지원센터 <신설 2026.4.21.>
- 처. 장애학생지원센터 <신설 2026.6.30.>

3. 부설기관

- 가. 평생교육원
- 나. 연구소 또는 연구 관련 센터
- 다. 원격평생교육원
- 라. 산학협력단 (개정 2023.2.13.)
- 마. <삭제 2025.9.25.>
- 바. 한국어교육원 <신설 2025.9.25.>

- ② 부총장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고, 총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0.1.21.) (개정 2024.3.8.)
- ③ 처에는 분장 업무별로 과 또는 팀을 둔다.
- ④ 각 처장(총무처장은 제외) 및 실장, 산학협력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임명하고, 총무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일반직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과장 또는 팀장은 일반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3.8.)
- ⑤ 학술정보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술정보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4.29.>
 - 1. 학술정보관 운영과 관련한 학술정보관 예산, 조직,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2.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4.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사항

제4조(정원) 본 대학교 교직원의 정원은 법인 정관에 따른다.

제3장 교·직원

제5조(교원 및 직원) ① 본 대학교에 교원 및 직원, 조교를 둔다.

- ②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의 전임교원과 겸임교수, 초빙교수, 특임교수, 명예교수, 강사 등 비전임교원으로 한다. (개정 2024.3.8.)
- ③ 직원은 일반직, 기술직, 계약직으로 하되, 각 행정부서별 정원배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3.8.)
- ④ 조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3.8.)

제6조(총장)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제7조(직무대행) 총장의 궐위 시에는 부총장이, 부총장의 궐위 시에는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예비군대대) 예비군대대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9조(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각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직제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분장) 각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4장 학과

제11조(학과) ① 본 대학교는 학칙의 규정에 의한 학부 및 학과를 둔다.

② 각 학부 및 학과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22.)

제5장 보직교원의 임기

제12조(보직교원임기의 목적) 본 대학교의 보직교원의 임기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보직교원임기의 임기) ① 보직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교내 교수에서 임용된 경우에는 정년 전에 임기만료 또는 해임되면 소속학과 교수로 자동 복직된다. (개정 2024.3.8.)

③ (삭제 2024.3.8.)

제14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4.3.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임명되어 있는 보직자의 임기는 그 임명일로부터 기산하며, 임기가 지난 보직교원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21일 정관개정일로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부서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기획실, 입학팀의 소관 사무는 직제규정, 사무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각 기획처와 입학처에서 승계한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기획실, 입학팀의 근무자는 별도 인사명령시까지 각 기획처, 입학처 소속 근무자로 본다.

제3조(종전의 사무행정행위 및 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기획실, 입학팀에서 시행된 문서 및 사무행정 행위들은 해당 사무를 승계한 기획처, 입학처에서 시행된 사무행정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규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제6조제1호나내지라목, 같은조제4호다목의 “기획실”을 “기획처”로 한다.

② 리더십과 행정관리규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제6조제3호가목나, 같은조제4호가목, 같은조제5호나목, 제7조제4호나목의 “기획실”은 “기획처”로 한다.

③ 사회적 책무 규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의 “기획실”은 “기획처”로 한다.

④ 특성화 및 발전계획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제5조제1호라목과 마목, 제6조제2호다목, 서식제1호 경영및재정부문 담당부서의 “기획실”은 “기획처”로 한다.

⑤ 장안대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①항의 “본교에는 행정부서로 교무처, 학생지원처, 산학협력처, 총무처, 기획실, 그 밖에 필요한 부서들”은 “본교에는 행정부서로 기획처, 교무처, 입학처, 학생지원처, 산학협력처, 총무처, 그 밖에 필요한 부서들”로 한다.

⑥ 내부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의 “기획실”은 “기획처”로 한다.

⑦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절 기획실, 제10조(기획실) 기획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장한다.”의 “기획실”은 “기획처”로 한다.

⑧ 위임전결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전결사항 업무내용의 “기획실” 위임전결 사항을 “기획처”로 한다.

⑨ 제규정류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기획실”은 “기획처”로 한다.

⑩ 제규정류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의 “기획실”은 “기획처”로 한다.

⑪ 제안제도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제11조제④항, 제25조의 관리부서 “기획실”은 “기획처”로 한다.

⑫ 교육만족도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기획실”은 “기획처”로 한다.

⑬ 교원의 역량개발 및 급여·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제6조제4호내지6호의 “기획실”은 “기획처”로 한다.

⑭ 자체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②항, 제8조제②항과 같은조제③항의 “기획실장”은 “기획처장”으로, 제7조제④항, 제12조내지제14조제①항, 제17조의 “기획실”은 “기획처”로 한다.

⑮ 자체평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제6조제1호, 제7조제1호, 제9조제1호내지제3호, 제10조의 자체평가보고서 관리부서의 “기획실”은 “기획처”로 한다.

⑯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제5조제1호나목, 같은조제8호가목과 나목, 같은조제9호, 제6조제1호와 제2호의 “기획실”은 “기획처”로 한다.

⑰ 학생생활 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④항, 제6조 역할 및 조치사항의 내용 “원활한 대외언론 대응을 위해 기획실과 긴밀히 협조”의 “기획실”은 “기획처”로 한다.

⑱ 대학발전기금조성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①항내지제③항, 제10조제②항내지제④항, 제12조, 제13조제②항, 제15조제②항과제④항, 제16조의 “기획실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제15조제③항의 “기획실”은 “기획처”로 한다.

⑲ 재정계획 및 재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제6조제2호가목내지다목, 제8조제2호내지제5호의 보고부서, 제12조 관리부서의 기획실은 기획처로 한다.

⑳ 연수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②항, 제7조, 제8조, 제9조의 “기획실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㉑ 연수원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기획실”은 “기획처”로 한다.

제11조의 “기획실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㉒ 산학협력교육활동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내지제2호의 “기획실”은 “기획처”로 한다.

㉓ 규정심의위원회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②항의 “기획실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㉔ 대학정보공시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의 기획실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㉕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⑤항의 “기획과(팀)장”은 “기획처 직원”으로 한다.

㉖ 학과구조조정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기획실”은 “기획처”로 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이 규정 시행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정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①항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승계이전의 소관 부서, 소관 부서장, 소관 부서직원이 소관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승계 이후 부서의 부서장 또는 그 소속 직원이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0.8.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0년 4월 20일 이후 산학협력처 대학일자리센터와 관련된 업무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거목은 2020년 9월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부서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교무처, 학생지원처의 소관 사무는 직제규정, 사무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처에서 승계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교무처, 학생지원처의 근무자는 별도 인사 명령시까지 산학협력처 소속 근무자로 본다.

제3조(종전의 사무행정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교무처, 학생지원처에서 시행된 문서 및 사무행정행위는 해당 사무를 승계한 산학협력처에서 시행된 사무행정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이 규정 시행 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정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 제1항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승계 이전에 소관 부서, 소관 부서장, 소관 부서직원이 소관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승계 이후 부서의 부서장 또는 그 소속 직원이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소속은 사무관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소속은 사무관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개정 이전의 직제사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